2026.11.23.

KiRi 리포트

| 포커스 |

금리 상승기 금리위험과 자본의 질: ② 손해보험회사

조영현 연구위원

요 약

○ 본고는 금리 상승기 손해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노출 변화와 지급여력비율, 기본자본비율 변동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본관리 측면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결과, 금리가 상승한 지난 1년간 손해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노출은 금리 하락 위험에서 금리 상승 위험으로 전환되었음. 즉,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손해보험회사는 지급여력금액이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함

○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달리 금리가 상승한 지난 1년간 기본자본비율이 상승하였으며,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가 이를 주도함. 다만,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손해보험회사의 기본자본비율도 하락함

○ 금리 수준에 따라 금리위험의 노출 방향이 전환될 수 있으므로, 손해보험회사는 금리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서 기본자본 감소액을 기준으로 금리위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듀레이션갭은 금리 수준과 최종관찰만기 확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부채의 금리 민감도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 미래이익과 미적립 부족액은 초과분에 포함되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회사는 기본자본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수단으로 기본자본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금융당국은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회사의 개선계획을 금리 상승과 하락 양방향 시나리오로 점검하고, 계획에 포함된 조치가 기본자본을 실제로 증가시키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본고는 생명보험회사 편[1]에 이어, 금리 상승기 손해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노출 변화와 지급여력비율, 기본자본비율 변동을 분석하고, 보험회사의 자본관리와 금융당국의 제도 운영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함[2]

- 계열회사 지분 평가액이 업계 합계를 좌우하는 삼성화재를 제외한 9개 사의 합계를 중심으로 분석함
  - 삼성화재는 1년간(2025. 6월 말~2026. 6월 말) 10개 사 지급여력금액 증가의 67.2%를 차지함
-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대비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의 비율이며, 기본자본비율은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2027년부터 50% 기준이 시행됨[3]
  - 기본자본은 보통주·이익잉여금 등 손실을 즉시 흡수할 수 있는 자본이고, 보완자본은 후순위채와 미래이익 성격의 일부 순자산[4] 등 손실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별도로 분류하는 자본임

2. 금리위험 노출 변화

○ 금리가 상승한 지난 1년간 손해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노출은 금리 하락 위험에서 금리 상승 위험으로 전환되어,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면 지급여력금액이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할 수 있음(〈표 1〉 참조)[5]

- 금리 민감도 공시에 따르면 금리 100bp 상승 시 9개 사 지급여력금액 변동은 2025년 6월 말 1.5조 원 증가에서 2026년 6월 말 2.7조 원 감소로, 50bp 상승 시에는 0.9조 원 증가에서 1.3조 원 감소로 반전됨
- 생명보험회사는 금리 100bp 상승 시 지급여력기준금액도 5.1조 원 증가하나 손해보험회사는 0.4조 원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 하락 폭(4.6%p)이 생명보험회사(25.9%p)보다 작음

1) 조영현(2026. 11. 9.), 「금리 상승기 금리위험과 자본의 질: ① 생명보험회사」,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이하 '①'); 2026년 6월 말 이후 금리 동향은 이 보고서의 1장을 참조하기 바람
2) 분석자료는 각사 경영공시의 K-ICS 세부자료와 금리충격시나리오, 각사 금리 민감도 공시임. 별도로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치는 K-ICS 도입(2023년)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임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1. 13.),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에는 2027년 3월 말 비율에서 2036년 3월 말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되는 최저 이행기준을 분기별로 부과하며, 기본자본 취약 보험회사는 2026년 중 개선계획을 제출함. 또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회사에도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 금액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함
4) 순자산은 K-ICS(건전성회계) 기준으로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감독회계상 자본항목(보통주·자본증권·이익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조정준비금(감독회계와 K-ICS의 평가 차이)). 한편, 지급여력금액은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가감한 가용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임
5) 각사 경영공시 「위험 민감도」의 금리 민감도 분석(금리 ±50·±100bp 시 경과조치 전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을 합산한 값임. 금리 민감도(듀레이션)는 금리가 변할 때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하는 비율임

〈표 1〉 금리 변동 시 지급여력 지표 변동(각사 금리 민감도 공시 합계)

(단위: 조 원, %p, 개)

구분	손해보험 '25. 6	손해보험 '26. 6	생명보험 '25. 6	생명보험 '26. 6
지급여력금액 변동(금리 50bp 상승)	+0.9	-1.3	-0.3	-3.6
지급여력금액 변동(금리 100bp 상승)	+1.5	-2.7	-1.3	-7.8
지급여력금액 변동(금리 100bp 하락)	-3.4	+2.6	-1.8	+4.3
지급여력기준금액 변동(금리 100bp 상승)	-0.9	-0.4	+1.5	+5.1
지급여력비율 변동(금리 100bp 상승, %p)	+8.8	-4.6	-7.5	-25.9
100bp 상승 시 지급여력금액 감소 회사 수(개)	3	8	12	18

주: 경과조치 적용 전, 손해보험회사 9개 사와 생명보험회사 21개 사(조영현(2026. 11. 9.), 「금리 상승기 금리위험과 자본의 질: ① 생명보험회사」의 〈표 1〉)의 경영공시 「위험 민감도」의 금리 민감도 분석을 각각 합산한 값이며, 결산일 기준 간편법으로 산출한 계산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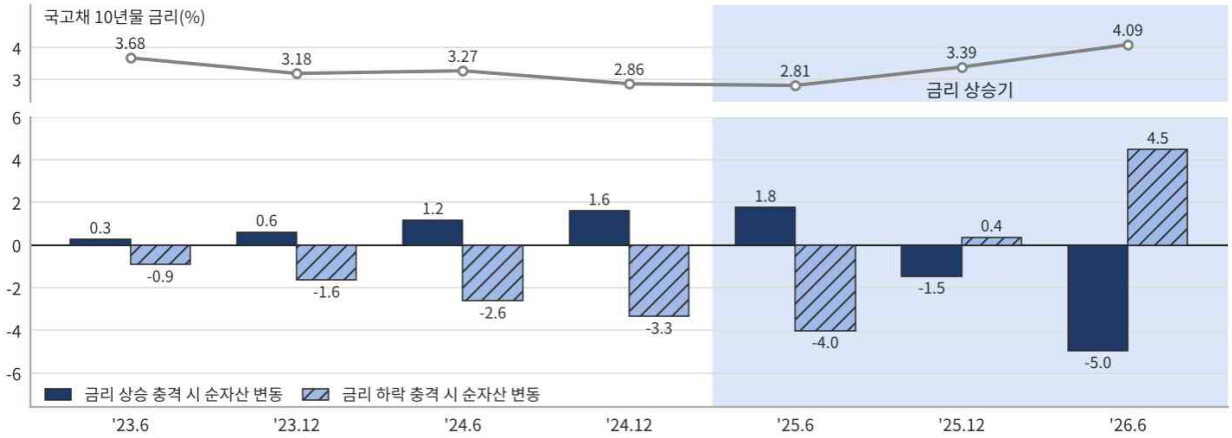
자료: 각사 경영공시(각사 2025년·2026년 2분기 경영공시)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 감독기준(K-ICS) 금리 상승 충격[6]을 적용한 순자산 변동도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순자산이 감소하는 회사도 분석 대상 전체로 확대됨(〈그림 1〉 참조)

- 금리 상승 충격 시 9개 사 순자산 변동은 1년 사이 1.8조 원 증가에서 5.0조 원 감소(기본자본의 15.5%, 반올림 전 기준)로 전환되었으며, 순자산이 감소하는 회사도 1개 사에서 9개 사 전부로 증가함

〈그림 1〉 감독기준 금리 충격 시 순자산 변동(9개 사 합계)과 국고채 금리

(단위: 조 원, %)



주: 경과조치 적용 전, 각 시점의 자산·부채에 감독기준(K-ICS) 금리 상승·하락 충격을 적용한 순자산 변동(세전)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분기 마지막 영업일의 금리임

자료: 각사 경영공시, 「금리위험액 현황」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이러한 금리위험 전환은 금리 상승 충격 시 자산 감소액은 소폭 축소된 반면 부채 감소액은 보험부채를 중심으로 크게 축소되어 자산 감소액을 하회하였기 때문임(〈표 2〉 참조)

- 자산 감소액은 21.7조 원에서 19.5조 원으로 축소되는 데 그쳤으나, 부채 감소액은 23.4조 원에서 14.5조 원으로, 보험부채 감소액은 25.0조 원에서 17.5조 원으로 축소됨

6) 금융감독원(2022. 12.), 『보험회사 新지급여력제도(K-ICS) 해설서』, Ⅳ. 4-2; 충격은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만 부여하므로 신용스프레드는 충격 전후 같으며, 상승 충격 폭은 만기 3~23년 91~106bp로 금리 100bp 평행 상승과 유사함(금융감독원(2025. 4. 1.), 「K-ICS 금리위험액 산출 관련 금리충격시나리오 제공」; 금융감독원(2026. 4. 1.), 「K-ICS 금리위험액 산출 관련 금리충격시나리오 제공」)

- 2026년 6월 말 기타부채 증가액(간접투자 차감 후 3.0조 원)은 순자산 감소액의 약 60%이며, 반기 재무제표 주석이 있는 2개 사의 경우 파생상품부채(채권선도·통화스왑 등)가 각각 기타부채의 100%, 62%에 해당함

• 부채 감소액/자산 감소액 비율은 금리가 상승한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에 각각 0.15, 0.18 하락하여 2026년 6월 말 0.75로 생명보험회사(0.80)를 하회하며, 9개 사 모두 이 비율이 하락함

- 이는 듀레이션이 긴 보험부채일수록 금리 상승 시 민감도가 빠르게 감소하는 특성(볼록성) 때문으로 보이며,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전인 2025년 하반기에도 보험부채 감소액이 더 크게 축소됨[7)]
- 다만 금리가 하락한 앞선 2년은 비율이 1.02에서 1.08로 상승하는 데 그쳤고 그 절반이 금리 변동이 작았던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하여, 자산 민감도 확대와 할인율 제도 등 금리 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2〉 감독기준 금리 상승 충격 시 자산·부채·순자산 변동(9개 사 합계)

(단위: 조 원, 배)

구분	’25. 6	’25. 12	’26. 6
자산 감소액(A)	21.7	20.7	19.5
부채 감소액(B)	23.4	19.2	14.5
보험부채 감소액	25.0	22.6	17.5
기타부채 증가액 등[1)]	1.6	3.4	3.0
순자산 변동(B-A)	+1.8	-1.5	-5.0
부채 감소액/자산 감소액(B/A, 배)	1.08	0.93	0.75

주: 1) 기타부채 증가액에서 간접투자 부채 감소액을 차감한 값으로, 부채 감소액(B)은 보험부채 감소액에서 이 값을 차감한 금액임. 경과조치 적용 전, 세전 기준임. 보험부채는 현행추정부채이며, 기타부채에는 파생상품 등 금리에 민감한 그 밖의 부채가 포함됨. 생명보험회사는 2026년 6월 말 부채 감소액/자산 감소액이 0.80배, 순자산 변동이 -9.9조 원임. 반올림으로 합계·비율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각사 경영공시, 「금리위험액 현황」을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 다만 감독기준 충격 결과는 각 시점의 자산·부채에 충격을 일시에 적용한 값이므로, 손실 예측치가 아니라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순자산이 변동하는 방향과 상대적 크기로 보아야 함

• 2025년 12월 말 금리 상승 충격 시 순자산은 1.5조 원 감소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2026년 상반기 실제 순자산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조정준비금 증가(5.5조 원)를 포함하여 8.9조 원 증가함

• 이 기간 금리는 만기 1~20년이 모두 0.7~0.9%p 상승하여 상승 충격과 유사한 형태였으므로, 이 차이는 이익잉여금 등(3.5조 원)과 계리가정 변경·신계약 등 충격에 반영되지 않는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임

3.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비율 변화

○ 금리가 상승한 지난 1년간 손해보험회사는 기본자본비율과 지급여력비율이 모두 상승하여, 기본자본비율이 하락한 생명보험회사와 대비됨

7) 1년간 최종관찰만기는 23년으로 같았으며,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되어 2026년 6월 말 부채 민감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1. 20.), “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9개 사 기본자본비율은 2025년 6월 말 63.1%에서 2026년 6월 말 76.0%로 12.9%p 상승하였으며, 지급여력비율도 189.8%에서 197.5%로 상승함
- 같은 기간 생명보험회사의 기본자본비율은 88.3%에서 81.3%로 하락함

○ **손해보험회사는 지난 1년간 순자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기본자본 증가로 이어져, 대부분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초과분' 증가였던 생명보험회사와 다름(〈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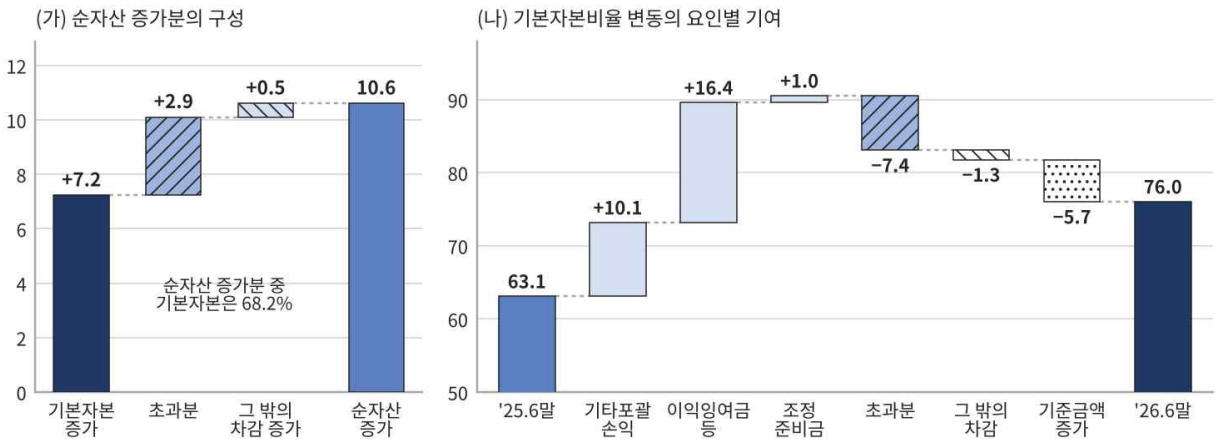
- 1년간 순자산 증가분 10.6조 원 중 7.2조 원(68.2%)이 기본자본 증가였으며, 해외 종속회사를 인수한 1개 사를 제외한 8개 사도 54.3%가 기본자본 증가였고 기본자본비율이 11.0%p 상승함
- 9개 사의 초과분은 2.9조 원(1개 사 제외 시 3.9조 원) 증가하여, 순자산 증가분 12.5조 원 중 9.7조 원이 초과분 증가였던 생명보험회사(조영현(2026. 11. 9.)의 3장)와 대비됨

○ **금리 상승기 1년간 기본자본비율 변동을 요인별로 분해하면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가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초과분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가 이를 일부 상쇄함(〈그림 2〉 참조)**

- 기본자본비율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10.1%p, 이익잉여금 등의 증가로 16.4%p,[8] 조정준비금으로 1.0%p 상승한 반면 초과분 증가로 7.4%p, 그 밖의 차감으로 1.3%p,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로 5.7%p 하락함
  - 미래이익 증가분은 초과분과 조정준비금에 같은 금액으로 반영되어 기본자본은 대체로 변하지 않으며, 두 항목 증가액의 차이는 초과분의 미적립 부족액 증가와 조정준비금의 상각후원가 자산 평가손실 등 때문임
  - 지급여력기준금액이 2.8조 원(7.2%) 증가하여 기본자본비율이 5.7%p 하락하였으며, 증가분 중 1.7조 원은 해외 종속회사를 인수한 1개 사에서 발생함

〈그림 2〉 금리 상승기 1년간 순자산 증가분의 구성과 기본자본비율 변동 요인(2025. 6월 말~2026. 6월 말)

(단위: 조 원, %, %p)



주: 9개 사 합계임. 경과조치 적용 전임. 그 밖의 차감은 자본증권 인정한도 초과액 등 불인정 항목, 이익잉여금 등은 비지배지분·보통주·자본증권·자본조정 포함함. (나)는 반기별 자본항목 증감의 직전 반기 말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 비율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증가 효과의 합계임 (반올림으로 합계·비율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각사 경영공시를 이용하여 저자가 계산함

8) '이익잉여금 등'의 증가 중 12.0%p는 이익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4.4%p는 사실상 전부 해외 종속회사를 인수한 1개 사의 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것임

○ 지난 1년간 초과분이 증가한 것은 신계약으로 미래이익(보험계약마진)이 증가하고, 감독회계상 부족액 중 준비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신계약으로 미래이익이 증가하면 K-ICS에서는 그만큼 순자산이 증가하나, 준비금은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한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적립하므로 증가분은 준비금 한도와 관계없이 대부분 초과분이 됨
- 감독회계상 부족액 중 적립비율(80~90%), 준비금 적립 한도, 결손으로 적립되지 않은 '미적립 부족액'도 초과분이 되며, 적립 한도에 여유가 있는 4개 사도 부족액의 80%만 적립하여 이 금액이 1년간 세후 약 1.1조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초과분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데, 이는 금리가 상승하면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이 증가하나, 보험부채 평가이익이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에 가산되어 대체로 상쇄되기 때문임(이는 조영현(2026. 11. 9.)의 3장에서 금리 상승으로 초과분이 증가한다고 본 설명을 바로잡는 것임)[9]

- 초과분은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이하 '준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며, 준비금 상당액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부채 평가이익이 가산됨[10]
- 다만 금리 변동으로 준비금 적립비율이 변경되거나 준비금이 한도까지 적립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증감하여 준비금이 변동하면, 초과분은 그 반대 방향으로, 기본자본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함[11]

4. 금리 추가 상승 시 기본자본비율

○ 2026년 6월 말 기준,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손해보험회사의 기본자본비율은 하락하나, 그 하락 폭은 생명보험회사보다 작음

- 공시 민감도로 계산하면 2026년 6월 말 76.0%인 기본자본비율은 금리가 50bp 상승할 때 73.5%, 100bp 상승할 때 70.4%로 하락함[12]
-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생명보험회사의 기본자본비율은 금리 100bp 상승 시 81.3%에서 62.9%로 하락하여, 하락 폭(18.4%p)이 손해보험회사(5.7%p, 반올림 전 기준)의 약 3배임

9) 조영현(2026. 11. 9.)의 3장과 〈그림 3〉은 금리가 상승하면 해약환급금 부족분이 확대되어 초과분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보험부채 평가이익이 준비금 상당액에 가산되는 점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이므로 본고의 설명으로 바로잡음. 조영현(2026. 11. 9.)의 수치는 변함이 없으나, 초과분 증가를 금리 상승의 결과로 본 해석과 이를 전제로 한 서술(조영현(2026. 11. 9.)의 4장 각주 15), 5장의 초과분 증감 관련 부분)은 본고 각주 10의 예외(변액보험 등)에만 성립함

10)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2026. 6. 29. 개정) Ⅲ.2.다.(3); 초과분=Max{(부족분 상당액-준비금 상당액)×(1-이연법인세율), 0}, 부족분 상당액=해약환급금-K-ICS 보험부채(보험료부채와 위험마진)+보험계약대출·재보험자산 평가 차이, 준비금 상당액=준비금+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보험계약·재보험계약 미실현손익(세전, 합계가 음이면 0)임. 따라서 부족분 상당액-준비금 상당액=(해약환급금-평가손익을 가산한 책임준비금-준비금)+(책임준비금-K-ICS 보험부채)+보험계약대출·재보험자산 평가 차이이며, 첫째 항은 감독회계상 부족액 중 준비금으로 적립되지 않은 금액, 둘째 항은 주로 보험계약마진임(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마진을 포함하나 K-ICS 보험부채에는 보험계약마진이 없음). 다만 변액보험 등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계약,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계약, 준비금 상당액이 0인 경우에는 금리 변동의 영향이 일부만 상쇄되거나 상쇄되지 않음

11) 준비금은 직전 분기 말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이 기준(2025년 170%, 2026년 160%) 이상이면 감독회계상 부족액(평가손익을 가산한 책임준비금이 해약환급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80%, 130% 이상이면 90%, 그 미만이면 100%를 한도(이익잉여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 적립하며, 결손이면 적립하지 않음(「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6이 준용하는 제6-11조의6과 부칙(〈제2025-16호, 2025. 6. 11.〉)). 2026년 6월 말 준비금은 한도에 여유가 있는 4개 사가 한도의 53~65%, 한도에 근접한 4개 사가 89.3~99.6%(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차감하면 98.0~100.0%)임

12) 공시 민감도의 지급여력금액 변동을 모두 기본자본에 반영하고 초과분은 고정하여 변동 후 지급여력기준금액 대비로 계산한 단순 계산값임

○ 기본자본비율 50% 미만 3개 사는 금리가 100bp 상승하여도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상회하나, 기본자본비율은 2026년 6월 말 현재 경과조치를 반영하여도 50%에 미달함[13)]

- 금리 민감도 공시에 따르면 금리 100bp 상승 시 3개 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129.7%→127.5%, 152.1%→142.9%, 157.6%→160.6%로 2개 사는 하락하고 1개 사는 상승함
- 공시 민감도로 계산하면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2개 사의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6.5%→-12.6%, 22.4%→10.8%로 하락하고, 나머지 1개 사도 50%에 미달함

5. 결론 및 시사점

○ 금리 상승기에 손해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와 달리 기본자본비율이 상승하였으나, 금리위험 노출이 금리 상승 위험으로 전환되어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모두 하락함

○ 금리 수준에 따라 금리위험의 노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손해보험회사는 금리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서 기본자본 감소액을 기준으로 금리위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6월 말 금리 상승 충격 시 순자산 감소의 약 60%가 파생상품 등 기타부채 증가에서 발생하므로, 양방향 한도에서는 채권선도 등 파생상품의 금리 민감도를 보험부채 민감도 변화와 함께 점검하여야 함
- 최종관찰만기 확대로 보험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다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리 상승 위험을 축소할 때 듀레이션 갭[14)]은 단계적으로 조정하여야 함
- 2026년 6월 말 평탄 충격(단기 상승·장기 하락) 시 순자산이 감소하는 8개 사의 감소액은 상승 충격의 0.2~1.4배로 회사마다 달라, 금리위험 한도에는 자사에 불리한 금리 기울기 변화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미래이익과 미적립 부족액은 초과분에 포함되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회사는 기본자본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본자본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준비금 적립 한도에 여유가 있는 회사는 2027년부터 미적립 부족액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될 예정이나 미래이익 성격의 초과분은 남으므로, 배당 수준을 기본자본비율 목표와 연계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준비금이 한도까지 적립된 회사는 손해율·사업비 개선이나 투자이익으로 이익이 증가하면 준비금 적립도 증가하여 미적립 부족액과 초과분이 감소하고 기본자본이 추가로 증가하므로, 이들 손익의 관리가 특히 중요함
- 기본자본비율 50% 미만인 회사는 결손이거나 준비금이 한도까지 적립되어 미적립 부족액 인정의 효과가 작으므로, 최저 이행기준(2036년 3월 말 50%)을 충족하도록 증자 등 기본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3)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2개 사의 기본자본비율은 기발행 자본증권 인정 경과조치를 반영하면 각각 -6.5%에서 -4.3%로, 27.9%에서 37.2%로 상승하고, 선택적용 경과조치까지 반영하여도 -5.4%, 47.6%임(2026년 6월 말). 나머지 1개 사(22.4%)는 자본·요구자본 관련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가 같음

1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 10. 20.), "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 듀레이션갭은 자산듀레이션에서 부채듀레이션×(금리부 부채/금리부 자산)을 차감한 값임. 최종관찰만기는 2026~2027년 23년을 유지한 후 2035년까지 30년으로 확대되어 23~30년 구간 현금흐름의 할인율이 시장금리에 연동되며, 듀레이션갭의 경영실태평가 반영은 2028년으로 연기됨(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 11. 4.), "계리가정보고서 도입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당국은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회사의 개선계획을 금리 상승과 하락 양방향 시나리오로 점검하고, 계획에 포함된 조치가 기본자본을 실제로 증가시키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노출이 지난 1년 사이에 금리 상승 위험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기존 금리 충격 시나리오(상승·하락·평탄·경사)를 모두 적용하여 이행 경로가 금리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초과분은 금리 변동으로 직접 변하지 않고 미래이익 증가분은 초과분이 되어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선계획은 기본자본이 실제로 증가하는 수단을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준비금이 한도까지 적립된 회사는 이익잉여금이 변동하면 준비금도 함께 변동하여 기본자본 변동이 확대되므로, 이익이 전망을 하회하는 경우의 기본자본비율 경로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